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-136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0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평생교육법」과 상이한 부분 및 평생교육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내용 간결화(안 제1조)
- 나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용어 정비(안 제2조)
- 다. 평생교육협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 개정(안 제5조 및 제8조)
- 라. 회의 소집할 수 있는 경우 중 중복 내용 삭제(안 제6조)
- 마.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지정 근거 마련(안 제9조)
- 바. 법제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 
(안 제3조, 제4조, 제10조, 제15조)

## 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0. 8. 27. ~ 9. 16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5) 제1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10.06.)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성인기초교육·문자해득교육”을 “성인 문자해득교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평생교육사”란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라한다”를 “라 한다”로, “평생학습 도시”를 “평생학습도시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지역주민”을 “구민”으로, “마포구평생교육협의회”를 “마포구 평생교육협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호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구성 및 위원)”을 “(구성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은 구청장”을 “의장은 구청장”으로, “부위원장”을 “부의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의장”으로, “회무”를 “협의회의 사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부위원장은 위

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”을 “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”으로 한다.

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”을 “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”로,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”를 “사람이 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“하고,”를 “하고 한 차례만”으로, “전임자”를 “전임자 임기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공무원은”을 “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국장
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 위원”이라 한다)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

나. 평생교육 전문가

다.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

라. 구 소재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위원장”을 “의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 하고, 같은 항

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근거리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단위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·운영 중인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·운영된 협의회로 본다.

제3조(협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(연임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, <u>성인기초교육·문자해득교육</u>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“평생교육사”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 <u>성인 문자해득교육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평생교육사”란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.</p>

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평생교육의 진흥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 에 노력한다.

② (생략)

제4조(설치 및 기능)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5조(구성 및 위원)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된다.

제3조(평생교육의 진흥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-----라 한다-----  
-----  
----- 평생학습도시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설치 및 기능) ① -----  
----- 구민-----  
-----  
----- 마포구 평생교육협  
의회-----  
-----.

② ----- 각 호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구성 및 운영)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의장은 구청장-----  
부의장-----  
-----.

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학무국장

2. 위촉직 위원 : 평생교육 전문가,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,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⑥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

③ 의장----- 협의회사무-----

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-----

⑤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----- 사람이 된다.

1.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국장
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 위원”이라 한다)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1명

나. 평생교육 전문가

다.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

라. 구 소재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

⑥ ----- 해당 -----.

⑦ ----- 하고 한 차례만 -----



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⑧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된다.

⑨ (생략)

제6조(회의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2.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

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설치)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(이하 “평생학습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

----- 전임자 임기-----

----- . -----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-----.

⑧ -----  
----- 1명-----  
-----.

⑨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회의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1. 의장-----  
--

<삭 제>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9조(설치) ① -----

-----

----- 서울특별

시 마포구 -----

-----

• 운영한다. <단서 신설>

② (생략)

제10조(기능)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~ 7. (생략)

제15조(자원봉사자)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·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---- . 다만, 근거리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단위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기능) -----  
-- 각 호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자원봉사자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 범위-----  
-----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# 4. 작성자 :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김해연 (☎ 3153-8972)